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2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부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6일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품목 및 방식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부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등이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법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¹⁾하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1일 평균 300kg 미만²⁾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에 포함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구분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은 두 폐기물의 처리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책임³⁾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⁴⁾됨.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

현행법상 재활용가능자원⁵⁾의 분리수거 체계 또한 이와 동일하게 이원화되어 있음.

생활폐기물은 제13조⁶⁾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제12조의3⁷⁾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리수거 관련 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별표 1])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3])	
1.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가. 골판지류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생’	: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리병		: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금속캔		:	4) (생략)	
마. 무색PET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락’	:	나. 점유자	
사. 합성수지 비닐류		: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 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아. 발포 합성수지		: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자. 의류		: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전지류		: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전기·전자제품		:		
파. 조명제품		:		
2.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분	품목	통합 배출요령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생’		
마로 배출	무색PET병			
	유리병			
	종이류			
	합성수지류			
	의류	‘락’		
	전지류			
	전자제품			
	조명제품			
※ 지자체는 별표1 제1호에 따라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하되, 주거형태·거점 수거시설 설치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이처럼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대규모 공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는 자원순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대형 공공기관과 학교는 하루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민간 수거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자원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⁸⁾함.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배출량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에도 일반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분리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분리수거 기준 적용 및 행정처분⁹⁾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②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건물의 소유형태(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분리수거대상 등) 및 수집·운반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적용하는

8) 헤럴드경제,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2024. 9. 21.

9) (생활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 → 과태료^{제68조}

(폐기물배출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위반 →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제41조}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